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 30321-84	기안용지 전화: 731-6391	시행상급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년		
시행일자	'86. 6.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보조 기관	부시장 건설관리 주택개발	전결 국장 과장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관 (고시안심관)	문·검 1986.6.11 발송
기안책임자	개발1제장 (남궁락)		심관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조				1986.6.11 서울특별시



제 목 : 흑석제 1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및 고시

(제 1 안)

내 부 결 제 *고시제 388 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 ('82.4.26) 및 같은고시 제512호('85.11.22)로 구역지정변경된 흑석제 1 주택

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5 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및 제 6 조(재개발사업계획의 기준) 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제 1 항 3 호 및 제 56조(특례) 6 호의 규정에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의 규정에의거 별안 (제 2 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흑석제 1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도서 1부.

(제 2 안)

교 시 안		1986.6.3. 제 12/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개발법시행령무담안과	
흑석제 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되고 같은고시 제155호('82.4.26) 및 같은고시 제512호('85.11.22)로 변경 지정된 흑석제 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및 제 6 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6조 및 제 58 조의 규정에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3.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 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 6.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흑석제 1구역제 1지구 및 제 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구역 명 : 흑석제 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제 1 지구 및 제 2 지구			
다. 면 적 : 84,246 m^2 - 제 1 지구 : 33,797 m^2 - 제 2 지구 : 50,449 m^2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기결정 시설에 일부저축 (변경없음)			
마. 건축 계획			
	건폐율	용적율	높이
	25%이하	270%이하	46.7m이하(제 1 지구) 47.1m이하(제 2 지구)
			주된용도 공동주택

(제 3 안)

수 신 : 총무처장관

제 목 : 관보 게재 의뢰

1. 저희시 흑석제 1주택개발재개발구역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의 규정에의거 사업계획을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따라 관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 부 : 고시안 사본 2부. 끝

(제 4 안)

수 신 : 건설부장관

참 조 : 도시개발과장

제 목 : 흑석제 1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 470호 (' 73, 12, 1) 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 155호 (' 82, 4, 26) 및 같은고시 제 512호 (' 85, 11, 22) 로 변경지정된 흑석제 1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6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56 조 및 제 58 조 규정에의거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그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

3. 사업계획결정 면적과 구역지정면적과의 차이는 추후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구역지정 면적을 관련규정에따라정정조치하고자 하오며 현재 흑석동 9번지일대등을 추가지정코자하고있으나 추가지정의 결과에따라 기정구역 주민의 민원이 극심하여 이물해소하고 사업을 조기착수코자 기정구역만을 우선 사업계획결정하고 추후추가지정시 변경조치코자합니다.

첨 부 : 1. 고시안 사본 1부

2. 흑석제 1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 끝

=====
= 흑석 제 1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
=====

1. 계획 대상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흑석제 1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번지 및 26번지 일원

다. 계획 면적

* 84,246^{m²}

(국.공유지 42,924 ^{m²}, 사유지 41,322^{m²})

라. 정비 대상 건물

* 426 동

(무허가건물 206동, 유휴가건물 220 동)

A P T 2 동 포함

마. 가구 및 인구

* 934가구 4,628 인

(가옥주 334 가구,세입자 600가구)

A P T 61가구 포함

바. 기 정 도 시 계 획

용 도 지 역	주 거 지 역
용 도 지 구	주차장 정비지구
시 설 (일 부 저 축)	학교 (명수대 국 교), 하천 (한강), 도로 (동작로)

2. 사업계획 기본 방향

- 지역여건을 고려한 2개지구 분달시행
- 지구별 일단의주택지조성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3. 부문별 사업계획 결정조서

가.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도시재개발법 제 6조의 2)

지구명 내용	축석제 1구역제 1지구	축석제 1구역 제 2지구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축석동 11번지 일원	서울시 동작구 축석동 26번지 일원
계획면적	33,797 m^2	50,449 m^2
정비대상건물	165 동	261 동
가구및인구	218가구, 834인	716가구, 3,794 인

나. 토지 이용계획

용 도	계		제 1 지 구		제 2 지 구		
	면적 m^2	%	면적 m^2	%	면적 m^2	%	
계	84,246	100	33,797	100	50,449	100	
택 지	73,328	87.0	29,245	86.5	44,083	87.4	
공 공 시 설	소 계	10,918	13.0	4,552	13.5	6,366	12.6
	도 로	8,480	10.1	2,114	6.3	6,366	12.6
	하 천	1,747	2.1	1,747	5.2	-	
	학 교	691	0.8	691	2.0	-	

다. 공공시설 정비계획

1) 도 로

노 선 명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결정근거	비 고
대로 1류 43호 (동 작 로)	35m	2,000m	노량진 본동 (광장25)	국립묘지앞 (대로1-21)	건교시 14 (77,1,31)	기결정된시 행완로 시설
사업구역내 저축규모	폭 5m ~ 30m 연장 : 482m (존치)					

2) 학 교

시설명	위 치	규 모	결 정 근 거	비 고
학 교 (명수대 국교)	혹석동 12-5 (제 1 지구내)	11,229 ² m	서울시고시 684호 (83.12.21)	기결정된 시 설
사업구역내저축규모		691 ² m (존 치)		

3.) 하 천

- 기결정된 시설 (한 강)
- 사업구역내 저축규모 : 1,747²m (존 치)

라. 건축물 정비계획

- 건축시설 수용도 : 공동주택
- 건 폐 율 : 25% 이상 하.
- 용 적 율 : 270 % 이하.
- 층수 및 높이 :
 - (제 1 지구) 15층 이하, 46.7m 이하
 - (제 2 지구) 15층 이하, 47.1m 이하.

4. 종전도시계획 결정 폐지조서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7 항)

• 도 로

구분	노선명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8~6	145	흑석동 산91-1	흑석동 28-104	
폐지	소로	8~6	145	흑석동 산91-1	흑석동 28-104	
기정	소로	4	82	흑석동 산91-1	흑석동 28-58	
폐지	소로	4	82	흑석동 산91-1	흑석동 28-58	

※ 첨부 : 사업계획 결정도

부시장